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업무상 혼란이 유발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협의 요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결과 통보 기간 정비(안 제4조제1항)

제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절차, 협의 결과 통보 기간의 기준을 통일함

	협의 절차	협의 결과 통보 기간
현행	▶ 부지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 재해영향평가(45일) ▶ 부지면적 5천~5만㎡이거나, 길이 2~10km : 소규모재해영향평가(30일)	▶ 부지면적 5만㎡ 미만이거나, 길이 10km 미만 : 30일 ▶ 그 외 : 45일
개정	상 동	▶ 부지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 45일 ▶ 그 외 : 30일

나. 협의 요청 서류의 보완·반려 규정 도입(안 제4조제3~5항 신설)

- 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흡한 협의 요청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협의 결과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협의 제외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중 토지 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등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로 협의 제외 대상을 규정

라.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개발계획등이 재협의 대상 이하의 규모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함

마. 선개념 사업의 재협의 기준 신설(안 제6조의3제6~9호 신설)

- 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및 길이 단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재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길이 단위 재협의 기준 신설

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3조제2항제3호 신설)

- 사업대상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규정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사. 부지면적, 선개념 사업, 연접한 둘 이상의 개발사업 등 협의 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미만이거나”를 “이상이거나”로, “미만인 개발사업: 30일”을 “이상인 개발사업: 45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5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른 항목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예측, 저감대책 등 중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협의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절토, 성토 등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의2) 제1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다만, 기존 노선은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간주한다)

7.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8.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길이 이상인 도로의 폭을 확장하거나, 철도 노선을 복선화하는 경우

9. 도로 노선에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IC, JC)가 추가되거나, 철도 노선 중 지상에 정거장이 추가되는 경우

제6조의2(경미한 변경사항의 관리) ①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6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재협의 기준 이하의 규모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개발계획등의 변경 없이 임시시설물(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

지, 사면 등)의 위치나 제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유지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를 “5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다목 중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를 “5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가목1) 중 “허가”를 “허가(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제2호비고1 중 “이상이거나”를 “이상인 경우로 하며, 선개념사업(도로, 철도, 임도, 하천시설 등)의 경우”로, 비고3 중 “같은”을 “단일 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로, “같은 종류의”를 “둘 이상의”로, 비고4 중 “대상 규모(부지면적)”을 “대상 규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협약의 결과의 통보) ① (생략) <u><단서 신설></u> 1. (생략) 2. (생략)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u><신설></u>	제4조(협약의 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u>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른 항목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약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생 략)

1.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예측, 저감대책 등 중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협의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단서 신설>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u>다만, 절토, 성토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지 않아 함</u>
<신 설>	제6조의2(경미한 변경사항의 관리)
<신 설>	①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서 정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u>”이란 제6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재협의 기준 이하의 규모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② 개발계획등의 변경 없이 임시시설물(가배수로, 임시침사지결, 저류지, 사면 등)의 위치나 제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유지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생략)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②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다만, 기존 노선은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간주한다)

7.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8.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길이 이상인 도로의 폭을 확장하거나, 철도 노선을 복선화하는 경우

9. 도로 노선에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IC, JC)가 추가되거나, 철도 노선 중 지상에 정거장이 추가되는 경우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별표1]

1. 행정계획

현행	개정안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u>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u>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u>5천제곱미터 이상인</u>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행	개정안
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u>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u>) 3. (생략)	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u>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u>) 3.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

현행	개정안		
<후단 신설>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2.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 른 개발행위의 허가(<u>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u>)	개발행위 허가 전

현행	개정안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u>이상이거나</u>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u>이상인 경우로 하며, 선개념 사업(도로, 철도, 임도, 하천시설 등)의 경우</u>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u>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u>단일 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둘 이상의</u>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연 락 처	(044) 205 - 5169